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1. 16 선고 2022나3009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

담당변호사 박오순

피고, 피항소인 1.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천

담당변호사 구태형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10. 19.

판 결 선 고 2022. 11. 16.

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2. 24. 선고 2019가단154879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 B과 D 사이에 2017. 7. 20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115,002,5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B은 원고에게 115,002,526원

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피고 C은 원고에게 115,002,526원1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초 피고 B을 상대로 ①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②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 대한 가액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, ③ 피고 C을 상대로 D을 대위하여 대여금청구를 하였다.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①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③ 피고 C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는 그대로 유지하되, 위 ② 청구를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

가. 제1심판결 제5쪽 16행 중 “피고 B은 가액배상으로 피고 C에게 위 115,002,5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”를 “피고 B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15,002,5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”로 고친다.

나. 제1심판결 제6쪽 19행 중 “(덧붙여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)” 부분을 삭제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, 피고 B에 대한

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,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(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).

재판장 판사 이창열, 판사 주철현, 판사 정경수

목록

1. 강원 평창군 K 전 9,954㎡
2. 강원 평창군 L 전 2,370㎡, 끝.

1) 원고는 2022. 3. 2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제외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,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유지함을 밝혔다.